

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재정재정부 「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」 기준

□ **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**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**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**

○ **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**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○ **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**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**그 외의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**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2개 이상 대학의 재학 이력이 있는 경우
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졸업(예정)인 경우
 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-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*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-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*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-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을 졸업(예정)인 경우
 -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 : 비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 : 해당

구분	채용분야	기준점수
일반 전형	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OEIC 750점/ TOEFL-iBT 85점/ TEPS 594점(New TEPS 322점)/ G-TELP(level 2) 71점/ OPIc IM2/ TOEIC-S IM3(舊 점수기준 130)
보훈 특별 전형	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OEIC 600점/ TOEFL-iBT 69점/ TEPS 485점(New TEPS 260점)/ G-TELP(level 2) 57점/ OPIc IM1/ TOEIC-S IM1(舊 점수기준 110)

*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(기존 청각장애인 2·3급)의 경우 모집분야에 상관없이 TOEIC 350점/ TEPS 375점(New TEPS 204점)/ G-TELP(level 2) 43점 기준점수 적용

□ **공통자격증**

구 분	평가등급		
	A	B	C
국어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BS한국어능력 1급 • 한국실용글쓰기 1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BS한국어능력 2+급 (2-급 포함) • 한국실용글쓰기 2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BS한국어능력 3+급 (3-급 포함) •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
IT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컴퓨터활용능력 1급 • 정보처리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컴퓨터활용능력 2급 • 정보처리산업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컴퓨터활용능력 3급 • 정보처리기능사
한국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사능력검정 1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사능력검정 2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사능력검정 3급

- * ‘국어능력인증’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상실('20.1월부)에 따라, 인정자격증 제외
- *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(한국사 자격증은 채용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자격만 인정)
- * 분야별(국어능력, IT능력, 한국사) 높은 등급 자격증 1개씩만 인정

(예시1) KBS한국어능력 1급 및 2급 동시 보유 시, 1급 자격 점수만 인정
 (예시2) 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정보처리기사 동시 보유 시, 1개 자격 점수만 인정
 (예시3) KBS한국어능력 1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1급 동시 보유 시, 각각의 자격 점수를 인정

- * 전산직 지원자의 경우, 직무자격증 보유를 감안하여 ‘IT능력’ 분야 자격증은 평가 제외

□ 직무자격증(전산)

구 분	평가등급		
	A	B	C
전 산	• 빅데이터분석기사	• 데이터분석준전문가	-
	• 전자계산기기사	-	• 전자계산기기능사
	•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-	-
	• 정보보안기사	• 정보보안산업기사	-
	• 정보처리기사	• 정보처리산업기사	• 정보처리기능사
	-	• 사무자동화산업기사	-
	-	•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	-
	-	-	• 웹디자인기능사
	-	-	• 정보기기운용기능사
	-	-	•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
	• CISA (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)	-	-
	• CISSP (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)	-	-

*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, 발급이 완료되고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

* 동일 자격종목 내 높은 등급 1개만 인정

(예시1) 빅데이터분석기사 및 정보보안기사 동시 보유 시

→ 각각의 자격 점수를 인정

(예시2)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동시 보유 시

→ 정보처리기사 자격 점수만 인정

채용 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이의신청자	성명	수험번호
	연락처	E-mail
이의신청 내용		

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스포츠레저(주) 대표이사 귀하

유의사항

- 채용 관련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,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상의 e-mail 앞으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.
-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.

※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: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,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,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스포츠레저(주) 대표이사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